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	2019.8.8.(목) 15:00부터	배포	
책임자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 (02-2100-2610)	담당자	정 태 호 사무관 (02-2100-2612)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장 천 성 민 (051-794-3400)		김 홍 조 팀 장 (051-794-3401)	

제 목 :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 9.2일,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 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③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을 우대 적용

1 추진 경과

-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 노력을 지속 중
 - 그동안 총 168만명의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19.6월말)
 -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
 -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19.7월말)
- 추가로, 당-정은 지난 5.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 장소) '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2 주요 내용

□ (업무 프로세스)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참고2)

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②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참고1)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③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 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 추가감면시 78~546만원

□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

○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9.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

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연번	센터명	소재지	대표번호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8층	1644-0120
2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02-351-8505
3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5 경기R&DB센터 1층	1899-6014
4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9층	031-755-2577
5	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032-715-5971
6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부설 금융복지상담센터(대전충남)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45번길 26-14	042-636-1331
7	광주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4층	062-954-0019
8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4층	061-285-3980
9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30-3390
10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종합민원실 內	063-288-0303
11	부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051-714-5766
12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신관 102호	055-716-8171
13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중앙로 83 밝음신협 3층	033-813-0115

구분	주요 내용
1. 안내문 발송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주소지(행정안전부 공공정보 활용)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안내문 발송
2. 대상자 확인	<p>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문의, ☎1588-3570)</p> <p>※ 대상자 여부 불분명시 해당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등 안내</p>
3. 채무조정상담 신청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상담 신청 →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담 후 '채무상담확인서' 현장 발급
4. 채무조정 신청	<p>채무자는 '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p> <p>* 제출서류: ①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신분증사본·주민등록등본, ③소득증빙서류, ④채무상담확인서</p>
5. 추심 중단	국민행복기금은 신용정보사 추심위탁을 해지하고, 위탁·직접 추심 중단
6. 채무조정안 작성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담확인서를 바탕으로 추가감면을 반영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안내
7. 채무조정 약정 체결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안에 서명(사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국민행복기금은 해당 채권 직접관리)